

○ 證據能力의 除限

一 現行 制條

⑥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禁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로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一 民主黨案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禁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로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現行과 同)

一 民主黨案

⑧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이거나 違法한 方法에 의하여 수집된 證據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

-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白의 證據能力을
除限하는 것은 現行規定과 같이 必要하나

- "違法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證據能力을
除限하고 있으나, 證據에 대한 證明力은 法官의
自由心證에 의하도록 自由心證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이를 제한할 必要가 없으며
刑事訴訟의 理想인 ~~사~~ 實體的 眞實發見을
위하여도 證據能力을 除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